

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의2서식] <개정 2016. 12. 13.>

행 정 기 관 명

수신자
(경유)

제 목 이의신청 ([]인용 []부분 인용 []기각 []각하) 결정 통지서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							
이의신청 내용									
결정 내용									
공개 일시	공개 장소								
공개 방법	[]열람 · 시청 []사본 · 출력물 []전자파일 []복제 · 인화물 []기타								
교부 방법	[]직접 방문 []우편 []팩스 전송 []정보통신망 []기타								
납부 금액	<table><tr><td>① 수수료 원</td><td>② 우송료 원</td><td>③ 수수료 감면액 원</td><td>계(①+②-③) 원</td></tr><tr><td>수수료 산정 명세</td><td></td><td>수수료 납입계좌(입금 시)</td><td></td></tr></table>	① 수수료 원	② 우송료 원	③ 수수료 감면액 원	계(①+②-③) 원	수수료 산정 명세		수수료 납입계좌(입금 시)	
① 수수료 원	② 우송료 원	③ 수수료 감면액 원	계(①+②-③) 원						
수수료 산정 명세		수수료 납입계좌(입금 시)							

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

3항 · 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기 관 의
장 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시행일)

우 도로명주소 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 팩스번호() /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/ 공개 구분

210mm × 297mm [백상지 (80g/m²)]

유의 사항

1.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,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 - 가.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
 - 나.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 - 다.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2.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.
 - 가.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· 전자결제 등
 - 나. 수입인지(정부기관) 또는 수입증지(지방자치단체)
3.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.
4.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.
5.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,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6.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**행정심판(서면 또는 온라인 : www.sipan.go.kr) 또는 행정소송**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* 참고: 위 유의사항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,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인 경우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